

연세경영연구 윤리규정(개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연세경영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논문 작성, 투고, 심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2 조 저자의 자격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자료 수집이나 단순한 번역 등과 같은 기타의 기여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 3 조 표절 금지

(1) 저자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표절”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저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자료, 주장, 연구결과 등을 활용할 때는 이를 명확히 밝히고, 참고문헌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4 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 금지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2) 이미 출간된 본인의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세경영연구의

편집위원장에게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1) 저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 출처 표시 및 참고문헌 목록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학술 자료를 학술적 토론, 인터뷰, 기타 개인적인 접촉 등을 통해서 얻은 경우에는 해당 학술 자료에 대한 권리가 있는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6 조 편집위원의 역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의 투고, 심사, 최종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제 7 조 차별행위 금지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객관적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 3 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9 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에게 저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도 안 된다. 단,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된 후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논문의 심사 과정 및 결과를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0 조 심사위원의 역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11 조 객관적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 12 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 13 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윤리규정 시행

제 14 조 윤리규정 서약

편집위원과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는 해당 논문 심사 관련 편집위원, 심사위원, 투고자에게 연세경영연구 윤리규정을 이메일로

통보하고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연세경영연구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에 동의하였다고 간주한다.

제 15 조 윤리규정 위반 신고

누구든지 연세경영연구의 편집위원과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세경영연구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윤리위원회

제 16 조 윤리위원회의 목적

윤리위원회는 연세경영연구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추가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5 인을 골라 편집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고 익명성을 보호한다.

제 18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9 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0 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인사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의 연세경영연구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에게는 이후 3 년간 연세경영연구에 대한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 년 4 월 1 일부터 투고되는 논문들을 대상부터 적용하며, 논문과 관련 없는 일반 사항은 2012 년 4 월 1 일부터 발효된다.